

신체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일실수입 산정 -임금상승분 반영과 생계비 공제를 중심으로-

(Assessing of Lost Earnings in Injury and Death Suits :
Focused on wage increase reflection and living expenses deduction)

이선재*
Sunjae, Lee

<국문초록>

현대인들은 교통사고, 산재사고, 상해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언론보도 등에서 심심치 않게 위와 같은 사고를 접할 수 있다.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후유증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일실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법원은 이 일실수입을 당해 피해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여야 되지만 그 동안 우리법원은 어떤 정형화한 틀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고 피해자의 장래 기대수입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피해자 마다 개별적으로 고찰하여 진정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신체손해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부상당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월 소득액에서 그 월 소득액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생계비 상당액을 공제한 후에 가동연한까지의 월

* 손해사정사, 선재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손해사정 전공 졸업
투고일: 2019. 07. 11. 심사일: 2019. 07. 19. 게재확정일: 2019. 07. 31.

단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월 소득액에서 생계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을 노동능력상실기간까지의 월 단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즉,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월 소득액, 공제할 생계비, 가동연한까지의 월 단위 호프만계수, 여기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이라는 기초자료를 우선 산정 및 적용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부상당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월 소득액, 노동능력상실율, 노동능력상실기간까지의 월 단위 호프만계수, 마찬가지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산정하거나 적용하여야 한다.

그 동안 우리법원은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실수입이라 함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근로소득(기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은 부상 또는 사망한 당시의 월 소득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또는 사망한 날에서 가동연한까지의 기대되는 월 소득액을 기초로 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부상 또는 사망 당시의 월 소득액보다 상승할 것이 상당하거나 통계상 상승할 것이 뚜렷한 경우에는, 예컨대 건설노임단가상의 노임단가는 매년 2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월 소득액의 상승분, 즉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망인의 생계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현재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망인 월 소득의 1/3상당액은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별표7)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별표1)의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증거에 의한 생계비 공제라기보다는 산정의 편의성과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보기 어렵다. 망인의 월 소득액은 망인마다 다를 수 있고 생계비 상당액의 공제액도 망인마다 편차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계적으로 망인 월 소득액의 1/3상당액만큼 공제하는 것은 어떤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합리적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한편, 우리 대법원도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망인의 생계비가 유족이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생계비로 삼아야 하고 유족이 제출하는 증거가 채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월 소득액, 나이, 성별, 직업, 평균생계비에 대한 통계자료, 가족의 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합리적인 생계비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신체손해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에 핵심적인 구성요소인 월 소득액과 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의 편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채택증거와 통계자료를 적용하여 가장 근사 값을 찾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수궁하게 되어 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있을 것이다.

※ 국문 주제어 : 일실수입, 생계비, 신체손해, 기대수입, 월 소득액, 노동능력상실, 통계자료

I. 서론

현재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전담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되고 이 손해배상전담재판부의 판결이 전국 법원의 기준이 되는 듯하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항목이 일실수입이고 망인의 나이가 젊을수록 일실수입의 액수는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망인의 손해배상금액 전체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구성요소 중에 망인의 월 소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와 생계비 공제금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의하여 발생한다.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¹⁾ 그런데 피해자의 일실 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임금 인상, 호봉 승급, 진급, 승진 또는 정년 연장 등으로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²⁾ 종전의 판례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³⁾

1)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09면.

2)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상계서, 109면.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1987. 9. 8. 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종래 장래의 임금 인상으로 특별사정으로 보아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불법행위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사법연수원, 전계서, 113면).

그러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 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 손해이므로 당연히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⁴⁾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 이익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⁵⁾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그 사고 당시 피해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될 수입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장해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9조 소정의 평균임금의 일률적·전반적인 인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이미 실현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이를 참작할 수 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까지 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장해연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한 정률보장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거나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동일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율이 5/100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그 평균임금의 인상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과거 5년간 평균

4)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전게서, 109면.

5)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임금의 인상률이 평균 6.5%를 초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장래에도 그 이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⁶⁾ 라고 판시함으로써 과거의 통계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망인의 월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할 정도로 확실시 되는 객관적 자료에 과거 통계자료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망인의 월 소득액의 1/3을 공제할 생계비 상당액으로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합리적인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일실수입의 개관

1. 일실수입의 의의

일실수입이라 함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때, 만일 이들 피해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향후 가동가능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가동(취업)하여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불로 배상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⁷⁾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근로소득(기대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이자, 배당금, 부동산임대료, 주식투자소득 등의 자산소득은 일실수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이상 본봉, 제수당, 상여금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일실수입 산정의 대상이 된다.

6)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판결.

7) 마승렬·김정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 연구」 제11권 제3호, 2014, 312면.

2.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1) 서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의 귀속주체가 사망자 본인이라는 전제하에, 사망자가 이견 불법행위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가동기간까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액, 즉 일실수입액을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의 손해로 판단하여 사망자의 상속권자에게 상속하는, 즉 상속이론에 근거한 손해배상방식이다.⁸⁾ 따라서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도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⁹⁾

(2) 사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구성요소

가. 월 소득액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자의 월 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에 의하면, 월 소득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예상 소득을 산정하여야 하고, 세무 신고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사직종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문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이 임금인상, 호봉승급, 진급, 승진 또는 정년연

8) 이천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한국·일본·중국, 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2호 2010, 133면.

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장 등으로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있는가이다. 종전의 법원의 태도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무로부터 얻고 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장차 증가될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¹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는 장래의 임금 인상을 특별사정으로 보아 가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불법행위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따라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손해라면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¹¹⁾

그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당해 불법행위에 의하여 사회관념상 통상 생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손해이므로 당연히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임금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라는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¹²⁾하여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장차 증가될 수입으로 인한 손해도 통상손해라고 판시한 이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임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하게 되었다.¹³⁾

나. 생계비

1) 생계비의 의의

생계비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10)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905 판결, 1987. 9. 8. 선고 86다카816 판결 등.

11)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04, 113면.

1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전게서, 109면.

2) 생계비를 공제하는 이론적 근거

가) 손익상계설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을 면한 사망자의 장래의 생계비는 사망으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일실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¹⁴⁾

나) 필요경비설

생계비는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적 경비, 즉 노동력재생산을 위하여 당연히 지출되는 비용으로 보아 수입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것이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 그 자체이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견해로 ‘노동력재생산비설’이라고도 한다.¹⁵⁾

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 부상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생계비를 공제하는 것은 손익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거나,¹⁶⁾ 부양의무자인 원고들이 미성년인 자의 사망으로 부양의무를 안 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익은 피해자 자신의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위 손익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시¹⁷⁾하여 손익상계설에 입각한 듯한 표현을 쓰고 있다.

3) 인정대상

생계비라고 함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사고가 없었더라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은 당연하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시 생계비는 공

14) 박윤직, 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상, 2000, 581면, 박우동,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인신사고소송, 1981, 41면.

15) 김종배, “일실이익의 산출방법과 산정기준”, 재판자료(제21집), 61면, 이보환,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1993, 266면.

16) 대법원 1966. 3. 22. 선고 66다119 판결.

17)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

제해야 하고,¹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¹⁹⁾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생계비 공제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부상한 피해자의 여명이 가동기간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여명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은 사망한 것에 준해서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²⁰⁾ 또한 생계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²¹⁾ 생계비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일률적이지 아니하며 각양각색이라 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연령, 세대주인 여부, 부양가족 수, 직업, 수입의 정도, 독신인 여부, 미성년자인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것이다.²²⁾

4) 입증책임

생계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측에 있다.²³⁾ 생계비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²⁴⁾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개개인의 생계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증거조사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적정선(대체로 수입의 1/3,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수입의 1/2)을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여 처리함이 보통이다.²⁵⁾

5) 인정기간

생계비의 공제기간은 원칙적으로 가동기간까지이다. 사망자의 일실 이익

18) 박영민,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보상, 법문북스, 176면, 20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전게서, 381면.

2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21)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479 판결.

22) 장중운, 신손해배상총람, 진원사, 169면, 2011.

23)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479 판결.

24)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판결,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1994. 4. 12. 선고 93다30648 판결.

25) 주로 피해자가 이미 가동연한이 초과된 자로서 다른 수입원이 없고 오로지 유족 연금 등 사회보장적 법률에 기한 약관의 급여만을 소득으로 얻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전게서, 190면~191면).

을 산정함에 있어 가동기간 경과 후 여명에 이르기까지의 생계비는 그 이전의 수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가동기간 중의 수입으로서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에 충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제할 수 없다.²⁶⁾

그러나 가동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가동기간이 지난 후의 생계비도 여기에서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 때 일실수입의 산정에 가동기간 이후의 일실소득이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 생활자가 사망하여 장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 수입을 상실한 경우 그가 받을 각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²⁷⁾

다. 가동기간

가동기간이라 함은 사람이 생존하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즉, 부상당한 후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간이 된다. 노동능력상실기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노동능력상실기간이 영구적이라면 같은 의미가 되겠지만 한시적이라면 한시적 노동능력상실이 종료하는 시점이 노동능력상실기간이 된다.

통상적으로 성년이 되는 19세부터 65²⁸⁾세까지로 볼 수 있다. 남자는 성년이 된 후에도 군복무가 종료하는 시점²⁹⁾에서 가동기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수입 상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가동기간이 지난 노인의 경우에도 하급심 실무에서는 사고

26) 대법원 1972. 4. 25. 선고 71다1156 판결.

27)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1993. 4. 27. 선고 92다18795 판결, 1993. 7. 27. 선고 93다1718 판결.

28) 종전에는 60세까지로 보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65세로 변경하였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29) 현재는 성년이 되는 19세부터 군복무 기간(21개월)을 합한 20세 9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다면 일정기간(1년 ~ 2년 정도) 동안은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가동기간은 여명과도 관련이 있는데 보통은 여명이 가동기간보다 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사지마비환자 또는 식물인간환자의 경우에는 여명 단축으로 인하여 가동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가동기간 65세가 가동이 종료되는 시점이 아니라 기대여명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동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 즉 이 경우에 일실수입 산정은 기대여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산정하게 된다.

라. 중간이자공제

법원이 장래에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배상을 명할 때에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배상을 명한다면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과잉배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³⁰⁾ 이 때 중간이자를 호프만 방식³¹⁾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하여 현가를 계산하는 수식³²⁾은 “장래 발생할 손해액 ÷ (1+0.05×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손해발생일까지의 월수 ÷ 12개월)” 이다.³³⁾ 우리나라에서는 일실수입의 현가 산정시 민사법정이율 연 5%³⁴⁾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30)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전게서, 241면.

31)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 방식과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대법원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실무는 대부분 호프만 방식에 의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호프만식 계산법에 대하여는 이 계산법으로 산출된 현가는 장래 기대 총수익을 만족시키고 남게 되어 있어 초과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고 이러한 모순은 기간이 길수록 더 크게 나타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현가로 받은 금액에 이자만으로도 기대수익을 모두 충족하고 남아서 원금은 영원히 부당이득을 하게 되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다(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04, 204~205면).

32) 현가액을 x라고 하고, 장래 발생할 손해액을 y,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의 월수를 m이라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y = x + (x \times 0.05 \text{ (법정연이율)}) \times m \div 12 \text{ (개월)}$.

33)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전게서, 241면.

34) 민법 제379조(법정이율)에서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마승렬·김정주, 전게논문, 312면), 이는 당사자간에 이자를 급부하기로 약정하였지만 그 이율에 관해 정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방법인 라이프니쯔식 산정방법 또는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사용하고 있다.³⁵⁾ 초기 법원의 판결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의 채용이 일반적이었으나 1976. 12. 2.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을 채택한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1980. 9. 10.자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교통사고 전담부인 제15부가 창설되면서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을 본격적으로 채택하였고, 동 교통사고 전담부의 판결들은 상급심에서 유지되기도 하였고 호프만식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1983. 6. 28. 선고 83다191판결에서 중간이자 공제방법으로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을 모두 시인하기에 이르고 있다.³⁶⁾

그러나 현재는 국가배상법을 포함한 손해배상실무에서는 단리 할인법인 호프만 계수를 사용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서는 복리 할인법인 라이프니쯔 계수를 사용한다.³⁷⁾ 중간이자공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할인을 5%의 적정성 여부와 공제방법(단리, 복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³⁸⁾

(3) 사망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실수입액을 산정한다(가해자에 대한 책임제한이나 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산식 : {월 소득액 - 생계비(월 소득액의 1/3 상당액)} × 가동연한까지의 월단위 호프만계수}

연 5푼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정이자의 경우에 그 이율을 정하게 마련이므로, 본조는 주로 금전채무불이행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 보통이다(김준호, 민법강의, 신정6판, 법문사, 2006).

35) 마승렬 · 김정주, 전계논문, 312면.

36) 마승렬 · 김정주, 상계논문, 312면 각주(4).

37) 이윤호 · 이천성, 일실이익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중간이자공제, 손해사정연구 제2권 제2호, 108면.

38) 이윤호 · 이천성, 상계논문, 114~123면.

이 사건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의 산정은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였고 생계비는 소득의 1/3 공제에 대한 원·피고 당사자 간 주장 사실이 없어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듯하다³⁹⁾.

Ⅲ. 월 소득 산정기준

1. 급여소득자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 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⁴⁰⁾

즉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임금수익을 월 소득액에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 또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익은 원칙적으로 사망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375 손해배상(자) 판결.

40)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⁴¹⁾

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임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고, 다만 장차 그 임금수입금액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장차 증가될 임금수입금액도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⁴²⁾

2.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의 일실수입 산정기초인 월 소득액의 산정은 총 수익 중에서 개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즉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수입인 이자, 점포의 임료 상당액 등 영업 외 수익, 가족이나 종업원, 동업자가 제공한 노무 대가 등을 모두 제외하는 방법⁴³⁾으로 총 수익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공무원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모든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1년마다 승급하고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의 승급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승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 위 규정에 의한 승급으로 원고의 손해는 증액될 것이 기대되는 충분한 객관적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위 규정이 공포 시행된 이상 객관적으로 주지하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

4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9383 판결.

4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43) 총수익 - (이자+임료+영업 외 수익+다른 사람의 노무 대가) = 근로소득.

공무원의 일실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 승급 제한에 관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에 없는 한 의당 위 승급규정에 의하여 매년 승급할 승급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⁴⁴⁾ 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군인, 군무원, 공무원, 농업협동조합 직원 등의 경우 이러한 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이 대체로 시인되고 있으며, 진급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확실히 예견된다면 이를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판결에 이르고 있다.⁴⁵⁾

그러나 그 후 대법원은 공무원에게도 다소 인색한 판결을 하고 있다. “국회 소속 공무원의 승진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제35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 경력, 적성 등의 주관적인 조건과 상위계급의 결원 유무, 결원 정도, 승진대상자의 수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거나 장차 승진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으로 장차 증가될 보수는 통상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⁴⁶⁾

한편,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을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포함한 판결이 있는데, 직업 및 경력 : 1974. 2.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4. 24. 의사면허를, 1979. 3. 27.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각 취득하여 1979. 3. 1.부터 1989. 4. 29.까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등으로, 1990.9.15.부터 1991.6.14.까지 학교법인 김제우석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각 재직한 바 있고, 1991. 10. 1. 광주적십자병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무직 20호봉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정년 및 가동기간 : 광주적십자병원 의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므로 2008.11.30.에 정년퇴직할 예정이었고, 산부인과의사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의사로서 일할 수 있다(경험칙).⁴⁷⁾

44)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2105 판결.

45) 이보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1993, 241~242면.

4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47) 광주고등법원 1994. 4. 1. 선고 93나7128 판결.

4. 도시일용근로자 및 농촌일용근로자

사고 당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던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농촌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장차 주거지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거주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부모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토 등의 농업기반도 없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장차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거나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에서 취업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⁴⁸⁾

4형제 중 막내로서 가족들과 함께 농촌지역에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사고 전부터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곳의 전산직업훈련원에 1년생으로 재학중이었고 부업으로 주유소의 주유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근래의 도시집중화 현상과 특히 피해자가 전산직종에의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원에 다니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단지 그의 가족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차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치고 농촌지역에 복귀하여 농업에 종사하게 되리라는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⁴⁹⁾

피해자가 교통사고 등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노동임금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⁵⁰⁾

4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49)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817 판결.

50)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다카2159 판결.

5. 통계소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⁵¹⁾

즉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지만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않으면 통계소득이나 추정소득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직종별,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하고 있다.

IV. 법원의 생계비 산정기준

1. 생계비 산정원칙

대법원은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⁵²⁾ 라고 판시함으로써 생계비 소요액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정도가 생계비는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5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5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30648 판결.

2. 법원의 생계비 산정기준

그러나 현재 하급심 판결의 대부분은 그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손해 배상실무에서는 수입은 1/3을 생활비로 공제하는 것에 대해 경험칙에 따른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있고,⁵³⁾ 참고로 국가배상법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30%,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35%의 생활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도 “생활비율 1/3”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⁵⁾

V. 월 소득 및 생계비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월 소득액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근로소득을 말하므로, 일실수입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월 소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법원 실무에서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호봉승급에 의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월 소득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일반 사기업의 사원이나 시중노임단가의 도시일용근로자 및 건

53)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3709 손해배상(산) 판결 등.

54) 이운호·이천성, 전계논문, 135면.

55) 삼성화재, 전계약관, 85면.

설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농촌일용근로자는 사고 당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하고 있어 장래의 기대수입 분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봉승급에 의한 임금상승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임금상승분을 월 소득액에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같은 이유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상승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의 사원이나 연간 2회에 걸쳐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의 임금상승분이나 통계청의 농촌일용근로자임금도 통계로서의 가치는 충분하고 그것 또한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사기업에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원은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사정이므로 임금상승분의 반영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 중 최소 금액인 도시일용근로자임금(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과 농촌일용근로자임금 만큼은 통계자료에 의한 연평균 임금상승분은 월 소득액에 반영되어야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시일용근로자와 농촌일용근로자의 과거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 도시 및 농촌일용근로자 통계소득

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금)의 최근 20년간 통계자료⁵⁶⁾

조사·공표 연도	상반기(원)	하반기(원)	전년대비 상승률(%)
2000년	37,052	37,483	
2001년	38,932	40,922	6.6% ⁵⁷⁾
2002년	45,031	50,683	19.8%
2003년	52,483	52,374	9.5%
2004년	52,565	52,585	0.2%
2005년	53,090	55,252	3.0%
2006년	56,822	57,820	5.8%
2007년	58,883	60,547	4.1%
2008년	60,547	63,530	3.8%
2009년	66,622	67,909	8.4%
2010년	68,965	70,497	3.6%
2011년	72,415	74,008	4.9%
2012년	75,608	80,732	6.7%
2013년	81,443	83,975	5.8%
2014년	84,166	86,686	3.2%
2015년	87,805	89,566	3.8%
2016년	94,338	99,882	9.4%
2017년	102,628	106,846	7.8%
2018년	109,819	118,130	8.5%
2019년	125,427		전기대비 6.1%
합계 상승률		121%	
최근 20년간 연평균 상승률		6.05%	

56)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 연도별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

57) 산식 = {당해연도(2001년 상반기 + 하반기) - 전년도(2000년 상반기 + 하반기)} / 전년도(2000년 상반기 + 하반기) × 100

나. 최근 9년간 통계청의 남녀농촌일용임금⁵⁸⁾

연도	남자(원)	여자(원)
2008년 1/4분기	63,855	42,320
2008년 2/4분기	68,579	44,328
2008년 3/4분기	70,454	45,889
2008년 4/4분기	70,734	46,151
2009년 1/4분기	71,360	46,371
2009년 2/4분기	71,993	47,232
2009년 3/4분기	72,573	47,671
2009년 4/4분기	72,875	46,854
2010년 1/4분기	73,976	47,388
2010년 2/4분기	75,442	48,882
2010년 3/4분기	77,149	50,127
2010년 4/4분기	78,122	50,662
2011년 1/4분기	78,227	50,762
2011년 2/4분기	80,109	52,487
2011년 3/4분기	81,842	53,982
2011년 4/4분기	82,666	54,777
2012년 1/4분기	82,908	54,783
2012년 2/4분기	85,426	56,430
2012년 3/4분기	86,606	57,431
2012년 4/4분기	86,989	57,433
2013년 1/4분기	88,831	57,997
2013년 2/4분기	91,954	60,671
2013년 3/4분기	93,375	61,863
2013년 4/4분기	93,507	61,915
2014년 1/4분기	94,210	61,997
2014년 2/4분기	96,894	64,604
2014년 3/4분기	97,730	64,492
2014년 4/4분기	98,272	65,304
2015년 1/4분기	99,252	65,688
2015년 2/4분기	101,700	67,546
2015년 3/4분기	102,224	67,577
2015년 4/4분기	102,425	67,539

58) KOSIS 국가통계포털 인터넷 홈페이지 국내통계, 남자농촌노동임금, 여자농촌노동임금.

연도	남자(원)	여자(원)
2016년 1/4분기	103,116	68,115
2016년 2/4분기	105,431	69,940
2016년 3/4분기	103,204	70,319
2016년 4/4분기	107,288	71,120
2017년 1/4분기	107,415	70,857
2017년 2/4분기	110,051	72,921
2017년 3/4분기	111,079	73,663
2017년 4/4분기	112,018	74,597
2008년 대비 2017년 상승률	61% ⁵⁹⁾	63% ⁶⁰⁾
최근 9년간 평균 상승률	6.77%	7%

(3) 통계자료를 이용한 월 소득액 산정 개선방향

가. 개선방향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최근 20년간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연평균 6%이상 상승하였고, 농촌일용근로자임금도 최근 9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남자는 6.77%, 여자는 7%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상승률로 계속 상승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에 의거 인정된다 할 것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이유가 장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현가로 배상받기 때문에 이자상당액 만큼 과잉배상을 받는 것이라면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에 의하여 월 소득액이 상승하는 것 또한 인정되어야 하고 통계자료에 의한 연간평균상승률 정도는 월 소득액에 반영하여 일실수입액 산정에 기초로 삼아야 마땅하다. 만약 산정당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의 연간평균상승률이 5% 정도라면 중간이자공제⁶¹⁾를 적용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59) 2008년 전체(273,622원)대비 2017년 전체(440,563원)의 상승률은 $440,563\text{원}/273,622\text{원} - 1 \times 100 = 61\%$

60) 2008년 전체(178,688원)대비 2017년 전체(292,038원)의 상승률은 $292,038\text{원}/178,688\text{원} - 1 \times 100 = 63\%$

즉, 도시 및 농촌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월 소득액 산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또는 5년간) 통계자료의 연평균상승률(또는 하락률)을 월 소득액 산정에 반영하여 일일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아래에서 가상의 사례를 통하여 산정해 보았다.

나.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분 반영한 월 소득액 산정 사례

〈산정 사례〉

[기초사실]	
- 피해자의 생년월일 :	1963년 12월 31일
- 피해자의 사망 일자 및 나이 :	2018년 12월 31일(만 55세)
- 가동연한 :	만 65세(2028년 12월 31일)
- 피해자의 월 소득액 :	도시일용근로자임금
- 사망일 기준 최근 10년간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연평균 상승률 :	6%

〈월 소득액 계산〉

기간	상승률	월 소득액(원 미만 버림)
2019년	6%	$125,427 \times 22^{62)} = 2,759,394$ 원
2020년	6%	$132,952^{63)} \times 22 = 2,924,944$ 원
2021년	6%	$140,929 \times 22 = 3,100,438$ 원
2022년	6%	$149,384 \times 22 = 3,286,448$ 원
2023년	6%	$158,347 \times 22 = 3,483,634$ 원
2024년	6%	$167,847 \times 22 = 3,692,634$ 원
2025년	6%	$177,917 \times 22 = 3,914,174$ 원
2026년	6%	$188,592 \times 22 = 4,149,024$ 원
2027년	6%	$199,907 \times 22 = 4,397,954$ 원
2028년	6%	$211,901 \times 22 = 4,661,822$ 원

61) 호프만식에 의한 중간이자공제는 연리 5%이다.

62) 현재 법원실무에서 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금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있다.

63) $125,427 \times 1.06$

다. 농촌일용근로자 임금 상승 반영한 월 소득액 산정사례

<산정 사례>

[기초사실]

- 피해자의 생년월일 : 1957년 12월 31일(남자)
- 피해자의 사망 일자 및 나이 : 2017년 12월 31일(만 60세)
- 가동연한 : 만 65세(2022년 12월 31일)
- 피해자의 월 소득액 : 농촌일용근로자임금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농촌일용근로자임금(남자) 연평균 상승률 6%

<월 소득액 계산>

기간	상승률	월 소득액(원 미만 버림)
2018년	6%	$112,018 \times 25^{64} = 2,800,450$ 원
2019년	6%	$118,739^{65} \times 25 = 2,968,475$ 원
2020년	6%	$125,863 \times 25 = 3,146,575$ 원
2021년	6%	$133,414 \times 25 = 3,335,350$ 원
2022년	6%	$141,418 \times 25 = 3,535,450$ 원

즉 도시일용근로자 피해자(망)의 남은 가동기간 10년(또는 농촌일용근로자 피해자 남자(망)의 남은 가동기간 5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의 산정을 매년 평균상승률 6%를 반영하면 위 표와 같이 월 소득액이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하여서 미래의 기대수입인 일실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근사치에 가깝게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월 소득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여서 무조건 배척할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64) 농촌일용근로자는 월 가동일수를 25일로 적용한다.

65) $112,018 \times 1.06$

2. 생계비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생계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1993. 5. 21. 선고 92나8742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 정도 소요되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비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당원 1986.9.9. 선고 86다카565 판결, 1991.8.13. 선고 91다8890 판결) 원심 판시처럼 수입의 다과에 불문하고 그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경험칙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⁶⁶⁾

즉, 원칙적으로 생계비 소요액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수입의 1/3 정도가 생계비로 소요된다고 하는 경험칙은 없다는 판결이다. 따라서 생계비 소요액에 대하여 청구인(원고)이 제출하는 증거 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증거를 채택하여 생계비를 공제함이 옳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에서 생계비 공제에 관하여 기계적으로 월 소득액의 1/3을 적용하고 청구인(원고)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생계비로 월 소득액 1/3 공제의 부당함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국가배상법⁶⁷⁾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⁶⁸⁾에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30%,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35%의 생활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행위 등으로 국

6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30648 판결.

67)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별표7).

6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별표1).

민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국가배상법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2) 생계비 공제의 개선방향

가. 서설

그렇다면 망인의 공제할 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위 대법원 판결에서 단순히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을 뿐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⁶⁹⁾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을 증거로 채택하여 적절한 생계비로 공제하는 방법과 만일 청구인이 생계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증거가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면 통계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 방법에 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한 방법

법원에서 망인의 유족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망인의 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 망인의 사망 직전 3개월간의 의식주와 관련된 지출⁷⁰⁾과 ② 출퇴근하기 위한 교통비⁷¹⁾에 대한 지출 등을 증거로 제출하게 하여서 그 제출된 증거가 경험칙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면 우선 증거로 채택 하되,⁷²⁾ 변론 종결 당시 아래의 통계자료, 망인의 가족 수, 망인의 직업, 물

69) 망인의 1개월간 의식주와 관련된 지출액, 교통비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0) 직전 3개월 동안의 의류구입과 식대 및 식료품 구입 그리고 주거비(월세, 대출이자 등)에 대한 서면입증, 신용카드 승인내역서 등으로 입증을 하면 될 것이다.

71) 자동차 유류대, 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서와 교통카드 승인내역서 등으로 입증을 하면 될 것이다.

72) 1개월로 평균한 금액.

가상승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생계비를 산정하고,⁷³⁾ 만일 제출된 증거가 믿기 어려운 것이라면 그것을 배척한 후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계자료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 것이다. 반드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계비로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을 적게 번다고 적게 쓰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우선 청구인에게 지우게 한 후에 제출된 증거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통계자료에 의한 방법

[2017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실질)]⁷⁴⁾

가계지출항목별(1)	2017					
	전체가구	전체가구 중위값	근로자 가구	근로자가 구중위값	근로자의 가구	근로자의 가구 중위값
가구원수(명)	2.46	-	2.60	-	2.30	-
가가주연령(세)	51.57	-	46.27	-	57.87	-
가구분포(%)	100.00	-	54.30	-	45.70	-
02.주류·담배(원)	34,063	27,397	38,446	29,941	28,856	23,483
05.가정용품·가사서비스(원)	109,116	55,082	123,473	61,605	92,059	47,076
08.통신(원)	137,316	119,099	152,848	135,289	118,862	97,001
03.의류·신발(원)	154,537	111,759	177,400	128,086	127,372	88,241
09.오락·문화(원)	171,436	87,242	196,569	111,562	141,576	60,091
06.보건(원)	178,442	81,272	174,929	82,941	182,615	78,916
10.교육(원)	183,213	372,892	219,641	398,833	139,932	333,982
12.기타상품·서비스	189,739	120,509	214,078	145,875	160,822	93,124

73) 불법행위 피해자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노동능력상실율, 과실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산정하는 것처럼 생계비의 산정도 위자료 산정처럼 제반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합리적인 듯하다.

74) 통계청 인터넷 홈페이지, 국내통계, 2017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실질)

가계지출항목별(1)	2017					
	전체가구	전체가구 증위값	근로자 가구	근로자가 구증위값	근로자의 가구	근로자의 가구 증위값
04.주거·수도·광열 (원)	280,558	205,304	293,615	214,375	265,046	192,773
11.음식·숙박(원)	337,390	289,892	399,526	346,766	263,566	208,631
01.식료품·비주류음 료(원)	340,587	293,534	339,693	300,510	341,648	283,645
07.교통(원)	364,449	169,415	430,099	202,192	286,448	126,370
비소비지출(원)	737,705	531,759	914,531	684,924	527,614	358,424
소비지출(원)	<u>2,484,041</u>	2,080,726	2,763,490	2,359,573	2,152,023	1,682,172
가계지출(원)	3,221,745	2,686,537	3,678,022	3,178,358	2,679,637	2,094,657

위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 이상, 실질) 표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의 가구원수 2.46명이 월 소비지출이 2,484,041 원임⁷⁵⁾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는 증거가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통계청의 가구당 1인 월 평균 소비지출 금액을 참고하고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의 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망인의 생계비 상당액을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듯하다.

3. 소결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위 두 가지 방법은 각 방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합리적인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산정된 생계비가 망인의 전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75) 2,484,041원/2.46명 = 1,009,772원이 된다.

산정한 생계비를 규범화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리라 여겨진다. 그것은 현재 법원에서 적용하는 망인 월 소득액의 1/3인 생계비가 망인의 전 생애에서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서가 아니고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 또한 그렇게 보면 될 것이다.

4. 월 소득액과 생계비 공제를 반영한 일실수입의 산정 사례

(1) 서설

아래에서 사망사고에 대하여 도시일용근로자와 농촌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서 현재 법원에서 산정하는 방법으로 먼저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에 개선방향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양자의 산정기준으로 산정한 일실수입의 차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산정방법이 합리적인 것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사망사고 산정사례(도시일용근로자)

[기초사실]

- 피해자의 생년월일 : 1963년 12월 31일
- 피해자의 사망 일자 및 나이 : 2018년 12월 31일(만 55세)
- 가동연한 : 만 65세(2028년 12월 31일)
- 피해자의 월 소득액 : 변론종결일 기준 도시일용근로자임금(2,759,384원)을 적용하고 매년 6%씩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함
- 사망일 기준 최근 10년간 도시일용근로자임금 연평균 상승률 6%
- 피해자의 과실 : 과실 없음
- 생계비 : 제출된 증거 및 통계자료, 가족 의 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변론종결일 기준 월 80만 원을 공제하고 물가상승에 의하여 매년 5%씩 상승하는 것으로 함

가. 현재 법원기준 일실수입 산정

$$(2,759,384^{76}) - 919,794^{77}) \times 97.1451^{78}) = 178,707,154\text{원}$$

위와 같이 산정이 매우 편리하다.

나. 개선방향에 따른 일실수입 산정

1) 월 소득액 산정

기간	상승률	월 소득액(원 미만 버림)
2019년	6%	$125,427 \times 22^{79}) = 2,759,394\text{원}$
2020년	6%	$132,952^{80}) \times 22 = 2,924,944\text{원}$
2021년	6%	$140,929 \times 22 = 3,100,438\text{원}$
2022년	6%	$149,384 \times 22 = 3,286,448\text{원}$
2023년	6%	$158,347 \times 22 = 3,483,634\text{원}$
2024년	6%	$167,847 \times 22 = 3,692,634\text{원}$
2025년	6%	$177,917 \times 22 = 3,914,174\text{원}$
2026년	6%	$188,592 \times 22 = 4,149,024\text{원}$
2027년	6%	$199,907 \times 22 = 4,397,954\text{원}$
2028년	6%	$211,901 \times 22 = 4,661,822\text{원}$

2) 일실수입액 산정

기간(년)	월 소득액(원)	생계비(원)	일실수입액 산정(원미만 버림)
2019	2,759,394	800,000	$(2,759,294 - 800,000) \times 11.6858 = 22,895,917\text{원}$
2020	2,924,944	840,000 ⁸¹⁾	$(2,924,944 - 840,000) \times (22.8290 - 11.6858) = 23,232,947\text{원}$

76) 변론종결일 당시 도시일용근로자임금(월 소득액).

77) 월 소득액 2,759,384원의 1/3 금액(생계비).

78) 잔여가동기간인 120개월의 호프만계수.

79) 현재 법원실무에서 시중노임단가의 보통인부임금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있다.

80) $125,427 \times 1.06$

81) 매년 5%씩 생계비 공제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함.

기간(년)	월 소득액(원)	생계비(원)	일실수입액 산정(원미만 버림)
2021	3,100,438	882,000	$(3,100,438-882,000) \times (33.4777-22.8290)$ = 23,623,480원
2022	3,286,448	926,100	$(3,286,448-926,100) \times (43.6739-33.4777)$ = 24,066,580원
2023	3,483,634	972,405	$(3,483,634-972,405) \times (53.4545-43.6739)$ = 24,561,326원
2024	3,692,634	1,021,025	$(3,692,634-1,021,025) \times (62.8521-53.4545)$ = 25,106,712원
2025	3,914,174	1,072,076	$(3,914,174-1,072,076) \times (71.8956-62.8521)$ = 25,702,513원
2026	4,149,024	1,125,679	$(4,149,024-1,125,679) \times (80.6106-71.8956)$ = 26,348,451원
2027	4,397,954	1,181,962	$(4,397,954-1,181,962) \times (89.0202-80.6106)$ = 27,045,206원
2028	4,661,822	1,241,060	$(4,661,822-1,241,060) \times (97.1451-89.0202)$ = 27,793,349원
합계			198,242,446원 ⁸²⁾

3. 소결

위와 같이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현재 법원의 산정방법과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산정방법으로 각 산정해 보았다. 법원기준의 산정은 매우 간단하면서 편리하고 이 논문의 산정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그러나 산정방법의 단순 복잡성을 따질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이 미래의 기대수입인 일실수입에 보다 근접하느냐 하는 것이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임금상승분 반영해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망인의 생계비는 제출된 증거와 통계자료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함이 옳을 듯하다.

82) 현재 법원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19,535,292원이 더 많다.

Ⅶ. 결론

이상에서 신체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에 관하여 일실수입의 개관,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및 그 문제점 그리고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의 임금상승분 반영과 합리적인 생계비 공제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미래의 기대수입인 일실수입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여 지레 포기하고 산정의 편의성만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변하는 시대에 법과 제도도 따라서 적용하여야 한다. 과거의 틀에 묶여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희망이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증거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만 남는다.

우리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임금이 상승하였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임금이 상승하리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것은 통계를 통해서 이미 증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상승분을 일실수입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에 반영(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산정의 복잡성 때문에 억지로라도 외면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생계비 공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생계비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월수입의 1/3이 생계비라는 경험칙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모든 사람이 월 소득의 1/3만큼 생계비로 사용한다는 것에 어떠한 증거도 없고 합리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 또한 월 소득액의 임금상승분을 반영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증거절차를 거치는 번거로움과 산정의 복잡성 때문에 하급심에서 적극적인 증거절차를 거치

지 않는 것 같고 청구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조차도 생계비 공제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은 그들도 생계비 공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싫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월 소득의 1/3을 생계비로 산정 하는 것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손해의 전보를 지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에서 합리적인 생계비를 산정하여야만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방향으로 일실수입의 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신정6판, 법문사, 2006
- 박영민,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보상」, 법문북스, 2012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경성문화사, 2014
- 장종운, 「신손해배상총람」, 진원사, 2011
- 삼성화재, 「개인용애니카자동차보험약관」, 2019. 2.
- 이보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1993
- 이윤호·이천성, 「한일자동차손해배상비교」, 한국손해사정사회, 2007
- 이주홍, 「실무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996
- 김은성,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 마승렬·김정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제11권 제3호 2014년 12월
- 서광민, “손해의 개념”, 서강법학연구 6권, 2004
- 이천성, “자동차사고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손해사정연구 제3권 제2호, 2010
- 이윤호·이천성, “일실이익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중간이자공제 : 미국, 일본의 논의를 근거로”, 손해사정연구 제2권 제2호, 2009
- 양승혜, “학생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4
- 주기동,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론, 민사재판의 제문제”, 민사실무연구회, 1994
- 대한건설협회, 2008년 ~ 2019년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
- 통계청, 국내통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전국, 1인이상, 실질), 2017
-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
- 성곡도서관 <http://ebook.kookmin.ac.kr/FxLibrary>.
- 국내학회지(KISS) <http://kiss.kstudy.com>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index.do>
- 로앤비법률정보(LAWnB) <http://www.lawnb.com>

Abstract

Modern people are exposed to various accidents such as traffic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and injuries, and in fact, they can encounter such accidents in media reports.

If a person dies or suffers from aftereffects of various accidents, and a loss of labor capacity occurs, the court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damages by rationalizing the damages by examining the victims individually and specifically, but it is true that the court has calculated the actual amount by fitting them into a regular framework. This paper originated from these problems and was prepared to present a more reasonable standard for calculating true daily income by considering each victim individually in calculating the victim's expected future income, the daily income.

In order to calculate the actual income of physical injury, the employee can be divided into the case of death and the case of injury. In the case of death, the person who died is calculat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monthly income from the deceased's monthly income to the amount of monthly income and multiplying the monthly cost of living to the period of operation, and in the case of injury, the monthly loss of labor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monthly loss of labor capacity by the monthly income by the monthly income by the monthly income by the amount. In other words, the basic data of monthly income, monthly income, monthly cost of living to be deducted, monthly rate of Hofman's responsibility in cases where there is a fault with the victim, and monthly income, labor capacity and labor capacity loss,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daily income, should be calculated and applied first, if there is a loss of labor capacity, if the victim is injured, then the monthly income, the monthly income, and the monthly loss may be applied to the

monthly period up to the monthly period to the monthly loss.

In the meantime, the court said, “The calculation of the actual income of victims who died or suffered physical disability due to misconduct should be based in principle on actual income at the time of accident determined by reasonable and objective data, and if the victim was engaged in a job whose term was set, only in light of the age of the victim, education level, nature of previous occupations, occupational experience, possible employment and other jobs, social and other socioeconomic conditions. Must be defined.

In other words, it was judged that the actual incom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should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expected income. However, unincorporated income refers to the expected income (expected income) that the victim would have obtained in the future, assuming there had been no accidents. Therefore, it seems right to base monthly income on the basis of expected monthly income from injury or death to operational age, rather than on the basis of the monthly income at the time of injury or death. If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monthly income from injury or death, o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for example, the unit cost of labor above the unit price of construction continues to rise twice a year. Therefore, it is considered more reasonable to calculate the actual income by reflecting the rise in the monthly income, ie the increase in wage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cost of living for the deceased, the amount of monthly income that is currently applied by the court is not considered to be more of an expedient and a quarrel between the parties than a deduction for living expenses based on evidence, although there are provisions of Article 6 (Appendix 7) of the National Reward Act and Article 10 (Appendix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storation and Compensation of the Democratic Movement. The monthly income of the deceased can vary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the deduction of a substantial amount of the cost of living can also vary widely from one person to another. Therefore, deducting this by one third of the monthly income that is mechanically net can be unreasonable and difficult to accept in some claima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uled, “The cost of living refers to the cost required for a person to lead a social life, which should be viewed as different from the amount required by the income, and the specific cost of living should be recognized by evidence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not as there is an empirical rule that says about a third of that income is spent on living. “

Therefore, if the cost of living of the deceased is recognized by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bereaved family, the amount should be used as a living expense, and if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bereaved family cannot be adopted, it is assumed that reasonable living expenses should be calculated at the discretion of the judge based on all circumstances including the monthly income of the deceased, age, gender, occupation, statistics on average living expenses, and number of the family members. Therefore, our courts should not only seek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in calculating the monthly income and cost of living, which is a key component in calculating the daily income of physical harm, but should seek the best value by applying the adoption evidence and statistical data, and in doing so,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will be accepted and the dispute will be settled quickly.

**※ Key words : Lost earnings, Living Expenses, Physical Damage,
Expected Income, Monthly Income, Loss of Labor Capability,
Statistical data**